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46
----------	-----

2023. 7. 21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7월 13일

-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상정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,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고려인 주민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포상과 명예도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제출배경

-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강제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\*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외국동포로 인식되어 왔음.

\*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(약칭: 고려인동포법 제2조)

- 「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되어 있으나, 고려인은 생계와 자녀 양육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.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,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,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됨.
- 안 제2조는 ‘고려인 주민’의 용어 정의에 관한 것으로, 고려인 주민을 「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, 법령과 조화롭게 용어 정의를 하였다고 판단됨.
-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, 도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상이라 사료됨.
- 안 제6조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, 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안 제9조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,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,

- 안 제10조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, 고려인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,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,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, 고려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"고려인 주민"이란 「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자로서 현재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고려인 주민의 지위)**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**제4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 
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. 다만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**제6조(지원사업)**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
2.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
3.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
4.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지원
5.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지원
6.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
7. 문화·예술·체육행사 등 문화활동 지원
8.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
9.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
10.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 지원
11.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
12.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
1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업무의 위탁)**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**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(포상)**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0조(명예도민)**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
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,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려인동포”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 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정책의 수립 등)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국회에 대한 보고)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 등)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
2.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
3.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
4.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
5.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
6.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)**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,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업무의 위탁)**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재외동포재단법」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민법

**제777조(친족의 범위)**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.

1. 8촌 이내의 혈족
2. 4촌 이내의 인척
3. 배우자

#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, 정책 당사자인 고려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사업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- 추계의 전제
  - 협의체 출석수당(연간) :  $100,000\text{원} \times 10\text{명} \times 2\text{회} = 2,000\text{천원}$ 
    - \* 출석수당 :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100천원
- 추계 결과 : 연간 2,000천원,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0,000천원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(자체재원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세 출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
협의체 수당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
재원 조달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
자체 수입	지방세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